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신설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53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안 제16조)	4
2. 시 · 군 · 구진로체험지원센터 신설 등(안 제16조의2, 안 제22조)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2. 8. 21.
3. 회부연월일 : 2022.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 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

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u>지역</u>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u>지역진로교육센터</u>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지역진로교육센터</u>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u><신설></u>	제16조(시·도진로교육센터) 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실정에-----</u><u>시·도진로교육센터</u>를-----. ② -----<u>시·도진로교육센터</u>의-----. 제16조의2(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진로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u>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의</u>----- ----- ----- -----.
---	---

1. 지역진로교육센터 명칭 변경(안 제16조)

현행 「진로교육법」 제15조¹⁾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로교육²⁾

1)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원을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동법 제16조³⁾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전국 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총 17개임.

< 지역진로교육센터 현황 >

2024. 7. 현재

시도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명(제정일)	지역진로교육센터명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16.7.7.)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17.7.19.)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6.12.20.)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16.9.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14.10.28.)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진로교육부에서 운영)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16.12.30.)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16.9.29.)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20.4.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경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16.7.19.)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강원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17.3.3.)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15.12.31.)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7.5.30.)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24.6.7.)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15.2.26.)	전라남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16.5.23.)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지원부에서 운영)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17.2.9.)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16.5.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자료: 교육부

3)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17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설치 대상 “지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체계를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간 기관 연계성을 높이고,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동법 제17조⁴⁾은 교육감이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지역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와 시·도진로교육센터 간 기능과 역할이 같은 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지역 진로교육 현안이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진로교육법」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센터 기관 간 위계와 연계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2.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신설 등(안 제16조의2, 안 제22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진로체험 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학생들이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학교와 연결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전국에 219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이와 관련하여 「진로교육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음.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

2024. 7. 현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교육청 직영	-	-	5	-	-	-	-	1	3	1	-	-	14	13	19	12	1	69
지자체 직영	6	1	-	5	-	-	-	-	9	-	-	-	-	-	-	1	-	27
직영 센터 수	6	1	5	5	-	-	-	1	12	1	-	-	14	13	19	13	1	92
교육청 위탁	-	-	-	1	-	3	-	-	2	17	10	14	-	8	3	4	1	65
지자체 위탁	19	15	-	4	2	1	5	-	17	-	-	-	-	1	-	1	-	61
위탁 센터 수	19	15	-	5	2	4	5	-	19	17	10	14	-	9	3	5	1	128
센터 수	25	16	5	10	2	4	5	1	31	18	10	14	14	22	22	18	2	219

자료: 교육부

다만, 동법 제20조제2항5)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진로 체험⁶⁾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⁷⁾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제1항),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제2항)하는 등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⁸⁾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5) 「진로교육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6)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 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진로교육법」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진로체험지를 발굴·제공하도록 할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간접적인 근거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임.

이렇듯 현행법에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기관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군·구에 설치·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전국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내 진로체험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교육활동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부재로 일부 현장에서 예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어 진로체험지원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안 제22조는 안 제16조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용어 반복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 수정 차원의 개정 내용임.

문 의 처
02)6788-5186